

주간 행정 홍보

【2020. 11. 30 ~ 2020. 12. 1】

1.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계획(7차) 변경고시
2. 야생조류 고병원성 AI항원 지속 검출에 따른 방사사육 금지
3.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자생단체 행사자제
4.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
5. 제8회 조설대 집의계 애국선구자 경모식 행사
6.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의무화
7.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 전」 발행
8. 제주 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
9. 2021년 오라동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10. 임기만료 통장 안내 및 신규 통장 추천
11.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12.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오 라 동

1.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계획(7차) 변경 고시 (담당자 728-4814)

제주시 고시 제2020 - 434호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계획(7차) 변경 고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안 발표에 따른 제주형 생활방역 1단계 운영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조치를 변경 시행합니다.

-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재지정 - <용어재정립>
- ② 중점·일반관리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방역수칙 조정>
- ③ 집합·모임·행사 시 - <변동사항 없음>
 - 1) (공공주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조항 유지
 - 2) (민간주관) 일시적 100인 이상 개최 시 도 및 행정시 소관(유관) 부서 신고 및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④ 종교시설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및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식사제공 및 숙박 금지 등) - <변동사항 없음>
- ⑤ 직접판매 홍보관 집합금지 해제 - <변동사항 없음>

2020년 11월 13일

제주시장

1. 행정조치 사항

- 1) 처분기간 : 2020년 11월 13일부터 ~ 제주시장 별도 지정 시까지
- 2) 처분당사자 : 행정조치 대상 시설 관리(운영자) 및 종사자·이용자

3) 처분내용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재지정 - <용어 재정립>

- ▶ (추가) 오락실·멀티방 등
- ▶ (병합) 대형학원(300인 이상) → 학원 / 대형마트 → 마트(300㎡ 이상)

조치구분	대상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p>①헌팅포차②감성주점③유흥주점④단란주점⑤콜라텍⑥노래방⑦뷔페⑧공연장(실내 스탠딩 포함) ⑨실내 집단운동시설⑩PC방⑪직접판매홍보관⑫학원⑬대중교통(버스, 택시)⑭비행기 ⑮공·항만⑯유원시설업⑰전통시장⑱공공청사 및 시설⑲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⑳오락실·멀티방 등㉑종교시설(소모임 포함)㉒결혼식장㉓장례식장㉔ 어린이집㉕콜센터㉖독서실㉗렌터카하우스㉘전세버스(탑승자 명부 포함)㉙버스터미널 ㉚박물관㉛미술관㉜영화관㉝실내 체육시설(자유업종 포함)* ㉞골프장㉟승마장㊱요트장 ㊲카지노 영업장㊳중양지하도상가㊴여객선㊵유람선(잠수함 포함)㊶도항선㊷წყ시 어선업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㊸산후조리원㊹요양시설㊺주야간보호시설㊻병·의원㊼이·미용업 ㊽약국㊾목욕탕㊿사우나㉑집회·시우장㉒직업훈련기관㉓스터디카페㉔상점·마트·백화점** ㉕실내·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p> <p>* 가상체험시설, 당구장, 실내 골프연습장(스크린 포함), 볼링장,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업, 탁구장 등</p> <p>** 상점·마트·백화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만 적용</p>

② 중점·일반관리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방역수칙 조정>

- ▶ (조정 대상) 학원 / 이·미용실 / 영화관 /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 ▶ (조정 내용)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권고에서 의무화로 변경

구분	대상시설
중점 관리시설	<p>①헌팅포차②감성주점③유흥주점④단란주점⑤콜라텍⑥직접판매홍보관⑦노래연습장 ⑧실내 스탠딩공연장⑨목욕장업⑩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p>
일반 관리시설	<p>①결혼식장②장례식장③학원④실내 체육시설* ⑤유원시설업⑥직업훈련기관 ⑦독서실·스터디카페⑧이·미용실⑨오락실·멀티방 등⑩PC방⑪영화관 ⑫공연장⑬놀이공원·워터파크⑭상점·마트·백화점</p>

③ 집합·모임·행사 운영 제한 - <변경 없음>

구 분	조치내용
적용대상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모임.행사 등 * 모임·행사 : 전시회, 박람회,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 스포츠 행사, 총회 등
공공주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단, 공공복리상 이유로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검토 후 예외적 허용
민간주관	실내·외 구분없이 일시적 100인 이상 개최 시 도 및 행정시 소관(유관) 부서 신고 후 핵심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하에 운영

④ 종교시설 및 활동 - <변경 없음>

구 분	조치내용
종교시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하에 종교활동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등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은 식사제공 및 숙박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⑤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운영 중단) 해제 - <변경 없음>

구 분	적용대상	시행일	해제일
집합 금지 (운영 중단)	직접판매홍보관	2020.09.28.	2020.11.07. 0시

4) 처분기관 : 시설 관련 소관(지도·점검·유관) 부서

5) 처분사유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안 발표에 따른 제주형 생활방역 1단계 운영지침 적용

6) 처분(명령) 위반 시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제주도의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구상권 등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제83조 제4항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단,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1월 13일부터 적용)

다. 방역수칙 미준수 등 처분 위반 시 시설 운영 중단 명령 등 상위 단계 행정조치 발동이 가능함

7)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 내지 4호 및 제3항

2.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처분 담당 : 해당 시설 소관(지도·점검·유관) 부서
끝.

2. 야생조류 고병원성 AI항원 지속검출에 따른 방사사육 금지

(담당자 728-4812)

○ 최근 야생조류 분변 등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전국적으로 지속검출되고, 국내 도려하는 겨울철새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AI 발생 예방을 위해 가금농가 방사사육 금지를 준수하여줄 것을 강조하여 알려드립니다.

* 유럽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유런 가금농가 발생과 관련 “가금농가의 방사금지”가 최선의 방역이라고 함

○ 아울러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농장 진입로 등 생석회 벨트 구축, 야생조류 차단망(그물망)정비 등 가금농가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자생단체 행사자제

(담당자 728-4803)

□ 최근 진주시 이·통장들이 제주지역 연수 후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지역사회에도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행정주관은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및 이·통장협의회 등 각종 자생단체 주관으로 개최예정인 자매결연지 방문 및 회원연수, 연말연시 송년회 등 각종 행사들에 대하여 유보조치 시행

* 단, 현재 제주형 특별방역행정조치(7차)에 따라 실내 50인 미만 회의개최는 가능

4.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계획 공고 (담당자 728-4811)

□ 지원기준

○ (지원대상) 2개분야 8,300여 개소

① 집합금지 업종 : 추석연휴(9.28~10.4) 기간 집합금지 명령 이행업체

- (유홍주점·콜라텍) '20. 10. 4. 기준 영업중인 사업자

- (단란주점·직접판매홍보관) '20. 10. 4 기준 영업중인 사업자로서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② '20. 6월 이후 창업기업 : '20.6.1~10.31 창업자로 매출액이 있고
연매출 환산액이 4억원 이하인 사업자

○ (지원금액) 100만원

□ 지원 제외대상

○ (공통사항) 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②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자

⇒ (집합금지 업종) 1.1~10.4 (6월 이후 창업기업) 6.1~10.31

□ 신청(지급) 대상

○ 사업체 대표자 신청(지급) 원칙, 공동대표자 중 1인, 가족대리 신청

- (공동대표) 공동대표자 1인이 위임장 구비하여 신청

- (가족 대리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 곤란한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구비하여 신청

- (가족명의 계좌 신청) 본인계좌 압류로 계좌이체 곤란한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 구비하여 신청

□ 신청 및 지급 일정

○ 신청기간 : 온/오프라인 '20. 12. 3(목) ~ 12. 16(수)

○ 지급기간 : '20. 12. 7(월) ~ 12. 31(목) 순차 지급

○ 이의신청 : '20. 12. 14(월) ~ 12. 22(화)

5. 제8회 조설대 집의계 애국선구자 경모식 행사 (담당자 728-4802)

- 항일구국운동의 시발점인 조설대에서 12인 애국선구자의 결연한 의지를 받들고 도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경모식 추진
- 생활방역위원회 지침을 준수, 참석자·대면행사 최소화하여 진행

□ 행사개요

- 일 시 : '20. 12. 5.(토) 11:00
- 장 소 : 연미마을 조설대(제주시 오라2동 3135 일원)
- 주 최 : 오라동주민센터 / 주관 : 조설대경모식추진위원회
- 참 석 : 50여명(집의계 12인 선구자 후손, 시장, 도의원, 지역주민 등)
 - ※ 1905. 11월 을사늑약이후 익월 12월에 연미마을 망곡단에서 집의계 선서문을 낭독하였다는 기록에 의거 매년 12월 첫째 주 토요일 경모식 거행
 - ※ 2010. 2월 국가 현충시설로 지정(관리번호 45-1-09)

□ 진행순서

- 경모식
 - 개 식
 - 국기에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 호국영령 및 12인 애국선구자에 대한 묵념
 - 경과보고
 - 헌 시
 - 경 모 사
 - 격 려 사
 - 특별공연(12인 애국선구자 퍼포먼스)
 - 만세삼창
 - 헌화·분향

※ 거리행진, 식전공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사간소화로 생략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안내



왜 분리해서 버려야 할까요?



국내 재활용품은
유사품목 혼합배출로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연 2.2만톤의 페페트 수입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로
연 2.9만 톤에서 10만톤으로
국내 고품질 재활용원료 확보

어떻게 변경되었을까요?



플라스틱 배출함에 일괄배출



투명 페트병 전용배출함에 배출하기

투명 페트병! 이렇게 배출해 주세요



내용물은
싸~악
비우기!



라벨은
착!
제거하기



찌그러트리고
짜~악
뚜껑 닫기~



7.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발행계획 안내

(담당자 728-4811)

발행목적 및 근거

-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토대 마련
-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매출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가맹점 등록 기준

- 제주자치도에 사업자로 등록된 중소기업

가맹점 등록 제한

-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 대규모점포 및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업종
 -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전자상거래, 무승인매출업종, 조세·공공요금 적용업종 등

가맹점 모집 대상

- (모집 대상) : 약 47,000여개업체 *출처 : 국세청 가맹점 현황('20.6.30기준)

세부 모집 계획

- (집중모집기간) : 2020.11.11.~ 2020.12.31.(2개월)
- (목 표) : 34,000개 총 모집대상 47,000개업체의 72%수준
- (모집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8. 제주 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 지원계획 (담당자 728-4811)

□ 사업개요

-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도내 미취업 청년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주 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 지원

□ 지원 내용

- 50만원 일시 지급

□ 지원대상 및 요건

1. 자격요건

- ①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②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③ 만19~34세 ④ 최종학교 졸업(중퇴)자 ⑤ 구직중인 미취업 청년

2. 우선순위

-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우선 순위 적용 시에는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 (2순위) 2020년 청년자기계발비 참여이력이 있는 자
- * (3순위) 2020년 희망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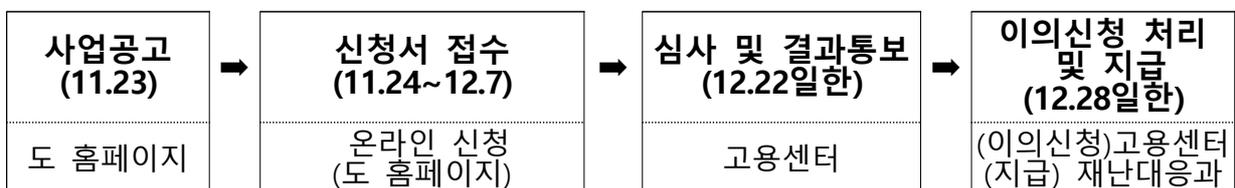
□ 신청방법 및 기간

1. 신청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 방문, 이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0. 11. 24.(화)~12.7(월) 18:00까지



□ 제출서류(신청서는 온라인 상에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제적)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통장사본

9. 2021년 오라동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담당자 728-4803)

- 現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2020. 12. 31에 만료됨에 따라 2021년부터 활동할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자 함
※ 위원 임기 : 2021. 1. 1. ~ 2022. 12. 31.

-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7조
- 공모기간 : 2020. 11. 20.(금) ~ 12. 4. (금)
- 공모대상 : 오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모집인원 : 25명(지역대표 7, 직능대표 5, 일반주민 13)
 - 오라동 위원 구성: 26명(당연직 1명, 공모 25명)
- 주민자치위원 자격심사: 12. 7.(월) ~ 12. 11.(금)
 - 심사 : 해당 읍면동장
 - 내용 : 나이, 거주지, 피선거권 여부, 주민자치학교 이수 여부, 연임 여부 등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심사
- 공개모집 추첨 및 추천 : 12. 14.(월) ~ 12. 17.(목)
 - 모집 정원 초과 시 : 공개 추첨
 - 모집 정원 미달 시 : 읍면동장 추천(지역, 직능, 소외계층 등 감안)

※ 추첨방법

- ① 읍·면·동장을 포함하여 이·통장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경찰 등 3명 이상을 참관인으로 구성
- ② 추첨자는 읍면동장으로 하며 해당 읍면동의 대표성 균형을 위해
㉠직능대표 ㉡일반주민 ㉢지역대표 등 분야별로 추첨 실시
- ③ 직능대표위원을 먼저 선정하고, 일반주민위원 선정 시 직능대표위원이 선정된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주민을 우선 선정
※ 미달될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성, 지역, 직능, 계층 등 해당 읍·면·동의 대표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이 추천

- 주민자치위원 위촉 : 2020. 12월 또는 2021. 1월 중 (추후 결정)

10. 임기만료 통장 안내 및 신규 통장 추천 (담당자 728-4801)

임기 만료 통장 현황

- 관할구역 : 오라1동 8통 외 11개통

구분	마을별											
	오라1	공설	사평				연미		정실		오라3	동성
통별	8통	6통	2통	9통	14통	15통	3통	18통	4통	11통	5통	7통

통장 추천 및 임명 절차

- 추천 방법
 - 마을회 운영규약에 의거 통장 추천 → 동에서는 자격조건 확인 후 임명
- 임명 절차



* 관련법규 : 「제주특별자치도 라통 및 반 설치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자격 요건

- 마을 운영규약에 따름
- 선출일 현재 2년 이상 관할 구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주민*

*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한 자격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추천 기한 : 2020. 12. 18.(금)

11.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담당자 728-48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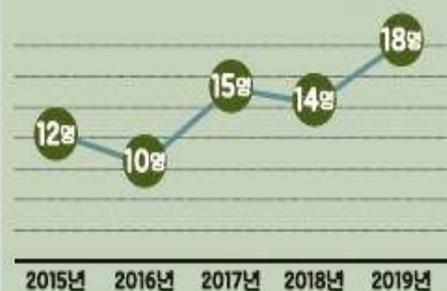
“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시면 교통비를 드립니다. ”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1회에 한해 **교통비 10만원**을 드립니다.

지원자격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2019.6.12.이후 운전면허 자진 반납한 자.
*원통기면허 제외

신청기간 **연중**
접수처 **읍·면·동주민센터**
지원내용 **교통비 10만원**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입금)

제주 고령운전자 사고 사망자수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망자수	12명	10명	15명	14명	18명



어떻게 지원 신청 하나요?

본인 직접 방문!

경찰서 민원실에
면허증 반납

하면

(당일)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게됩니다.

신분증 지참!!

가까운 읍·면·동에
지원 신청하면

구비 서류

- 교통비 지원신청서
- 운전면허취소 결정 통지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교통비
지급!!

전월 신청자 대상으로
다음달 지급
(도 교통정책과)

12.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담당자 728-4816)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신 “차량번호”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되며, 운행하다 적발될 시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20. 12. 1. 시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및 시기	○ 발령기준(초미세먼지 농도) ① 당일 $50\mu\text{g}/\text{m}^3$ (0~16시 평균) + 내일 $50\mu\text{g}/\text{m}^3$ 초과 예보 ②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 + 내일 $50\mu\text{g}/\text{m}^3$ 초과 예보 ③ 내일 $75\mu\text{g}/\text{m}^3$ 초과 예보 ○ 발령시기 : 시행 전날 17시 이후 발령 (휴대폰 안전안내문자, 도 홈페이지 등)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 [환경부] 내일 06~21시 전북, 제주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차량 운행제한. 대중교통 이용, 필요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건강관리에 유의 바랍니다. </div> <p style="text-align: center;">※안전안내문자 예시 :</p>
운행제한 단속방법 및 단속시간	○ 단속방법 -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단속카메라(공해차량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실시 ※ 카메라 설치 현황 도청 홈페이지 참고 ○ 단속시간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00~21:00 까지 ※ 휴일(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운행제한 미 실시 ○ 운행하다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1일 1회 최초 적발지 부과)
단속 제외 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단속유예 신청방법	- 인터넷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회원 가입 후 ‘저공해조치 신청’ - 붙임 “저공해조치 신청서” 작성 후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단속유예 신청시 제주도내에서는 2021.6.30.까지 단속이 유예됨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콜센터(064-120번) - 제주도청 미세먼지대응팀(064-710-3111, 3112)

※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20.12월~'21.3월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행제한을 단속하고 있으니, 수도권을 운행하시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경기를 운행하시는 경우 11/30일까지 저공해신청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